

**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**  
**일부개정법률안**  
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4539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2. 1. 25.

발 의 자 : 한기호 · 김도읍 · 김석기  
김성원 · 백종현 · 성일종  
유의동 · 이양수 · 이철규  
태영호 · 홍준표 의원  
(11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에서 수복지구를 제외하고 있어 수복지역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수복지구는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, 2022년 8월 4일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이 법에 따른 권리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및 법률 제16913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##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법률 제16913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중 “시행일부터 2년간”을 “2024년 8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(적용 지역 및 대상)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수복지구는 제외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5조(적용 지역 및 대상) -----<br>-----<br>-----<단서 삭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3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법률 제16913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률 제16913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시행일 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이 법 시행 중에 제11조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2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| 제2조(유효기간) -----2024년<br><u>8월 31일까지</u> -----.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